

#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하병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4. .  
발의의원 : 하병문, 박종필,  
윤권근, 권기훈,  
박소영, 김정옥,  
이성오, 정일균,  
하중환, 임인환  
의원(10명)

## 1. 제안(개정) 이유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고취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나. 장학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장학생의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장학금의 지급중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완료

##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환경공무직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공무직”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구·군 소속의 공무직 근로자로서 도로·가로 청소, 폐기물 수거·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시에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평균 C학점 이상인 사람
2.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장학금 지급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단위 이상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국내대회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3. 신입생은 입학성적(수시 또는 정시 전형)이 상위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4.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장학생을 제한한다.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장학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환경공무직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와 구·군의 환경공무직 현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

1. 환경미화 업무 중 순직 및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직의 자녀

2. 「상훈법」에 의한 훈장 및 포장,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의한 포상을 받은 환경공무직의 자녀

3. 장기근속 환경공무직의 자녀

4. 그 밖에 시장, 구청장, 군수가 장학생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제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장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시장은 장학생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수령한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퇴학, 정학, 휴학 등으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2. 장학생 선발일 전 부모가 환경공무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학금을 등록금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장학생은 제1항 각 호의 장학금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군수(시의 경우 소속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구청장·군

수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신청서

### 1. 장학생 인적사항

- 학 교 명 :
- 학과 및 학년 :
- 성 명 : (생년월일 : )

### 2. 환경공무직 인적사항

- 소 속 :
- 성 명 : (생년월일 : )
- 최초임용일자 : 년 월 일 (근속년수 : 년 월)

### 3. 환경공무직 소득 및 재산사항

주거 상 황	주택( ) 전세( ) 월세( ) 기타( )	월평균 소득액 ※세금 및 4대보험 공제 전	재 산 가 액(천원)		
			계	토 지	건 물
표창여부		천원			

※ 소 득 액 : 가구주 및 가구원의 소득합산(근무처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재산가액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과세내역서 제출)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재학증명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입상증명서 1부(필요시 제출)

#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재학사항 :                      대학(교)                      학부(과)                      학년

위 본인은    년도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신청하면서 다른 장학금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만약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제6조제3항 단서의 경우 제외) 장학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귀하

#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대구광역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따라 ○○학년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20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 관 계 법 령

##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